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1

발의연월일 : 2020. 9. 22.

발 의 자: 박용진 · 윤관석 · 기동민

민병덕 • 주철현 • 정성호

이성만 • 전용기 • 이소영

이탄희 · 용혜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의2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의2의 제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시세조 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익"으로 한다.

-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제429조의2(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신 설>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
	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
	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
	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
	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u>과할 수 있다.</u>
	<u>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u>
	<u>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u>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u>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u>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
	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
	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
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
래행위 등을 한 자
<u>②</u>
<u>০] ত্</u>]